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28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조계원 · 김우영 · 민형배
안도걸 · 양부남 · 이성운
진성준 · 최혁진 · 한준호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법적인 보호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나 보상금 지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이중 절차’ 구조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신고자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을 지을 뿐만 아니라, 별도 신청 과정에서 신원 노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신고자가 정당한 보호·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보상금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신고자가 내부 정보인 수입 회복 사실을 알기 어려워 보상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보호·보상 신청의사를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사실을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사기관 등은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가 보호·보상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즉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함.

또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 및 제2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신고자에게 제12조·제13조·제15조·제22조에 따른 보호조치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⑧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제7항에 따른 안내 시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등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 ~ ⑥ (생략) <u><신설></u>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신고자에게 제12조·제13조·제15조·제22조에 따른 보호조치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⑧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제7항에 따른 안내 시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등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체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청한 것으로 본다.</u>
제26조(보상금)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6조(보상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직</u>

⑦ (생 략)	<u>점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u>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